

1. 개정이유

- 가. 인구 고령화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 대두
- 나.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, 전국연합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장 등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(시행규칙 제7조)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 도모(안 제10조 제2항 개정)
- 나. 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'60명 이내'로 개정하여 조직 확대 및 정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(안 제11조 제1항 개정)
- 다. 임무 중 행사장 안전지원활동에 축제를 포함시키고, 재난지역 수습·복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유도(안 제13조 개정)
- 라. 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력 향상 도모(안 제18조 개정)
- 마. 전국연합회의 부회장(2명)과 감사(2명)에 대해 남·여 1명씩 말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(안 제23조 제2항 개정)
- 바. 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(안 제23조 제8항 신설)
- 사.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율성 강화(안 제24조)
- 아. 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(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입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 이수시간을 50%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

제10조제1항 중 “대장”을 “대장과 부대장”으로, “한”을 “대장은 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임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60명 이내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공연”을 “공연, 축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주민 생활”을 “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수습, 복구와 주민생활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용소방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소방본부장 또

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자체교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신규”를 “신임교육 : 신규”로, 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:”을 “날로부터 2년 이내에”로, “관한 기본교육”을 “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화재의 성상 및 진압전술

라.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

마. 생활안전구조

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본교육 : 신임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(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12시간

제1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”을 “재난 예방·대응 시 현장안전 및 대응역량 증진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본교육 및 전문교육”을 “신임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방본부장”을 “소방청장, 소방본부장”으로, “훈련”을 “훈련, 기술경연대회와 국내·외 연수 등”으로 한다.

가.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

나. 교통사고, 수난사고, 산악사고 등 인명구조

3. 전담교육 : 신입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위 호의 기본

교육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 12시간

가.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

나.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

다.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
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제2항 중 “2명, 감사 2명”을 “2명(남녀 각 1명), 감사 2명(남녀 각 1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하고 한 번”을 “하며, 한 차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전국연합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운영분과위원회, 연구개발분과위원회, 자원봉사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,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·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문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의용소방대의 명칭)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·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의용소방대의 표지)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(旗)를 두

고,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.

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,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.

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

제5조(임명구비서류)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1. 이력서 1부
 2.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)
 3. 사진(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) 2장
 4.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)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“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입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 이수시간을 50%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

2.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,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(非違事實)이 있는 경우
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정년)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

연히 퇴직한다.

제8조(조직)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대장 및 부대장)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·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,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임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정원 등)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(동·리)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) ① 시·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2의2.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
3.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, 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수습, 복구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복장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.

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신분증명서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

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(재직)증명서를 발급하고,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

제16조(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)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무상대여) 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소방용 통신시설
2. 소방용 차량
3. 화재진압장비·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
4.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

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장비의 지급) ①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의용소방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자체교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.

1. 신임교육 : 신규 임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36시간

가. 의용소방대 제도

나. 화재의 성상 및 진압전술

다. 위험물 및 전기·가스 안전관리

라.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

마. 생활안전구조

바.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기본교육 : 신임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(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12시간

가.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

나. 교통사고, 수난사고, 산악사고 등 인명구조

다.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

라. 그 밖에 재난 예방·대응 시 현장안전 및 대응역량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전담교육 :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위 호의 기본교육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 12시간

가.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

나.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

다.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, 기술경연대회와 국내·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·훈

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

제19조(소집수당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전담의용소방대원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,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,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(재해보상)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2. 장애보상
3. 장례보상
4. 유족보상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

제22조(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)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,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(支部)로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“지역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3조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

국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“전국연합회”라 한다)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·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.

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, 부회장 2명(남녀 각 1명), 감사 2명(남녀 각 1명)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(회장,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),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2.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3.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·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,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,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.

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⑧ 전국연합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)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되,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.

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삭제

④ 삭제

제25조(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.

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6조 삭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 (제2조제3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소방장비를 보관·유지·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, 대기실,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장비기준(차량 적재기준)

구 분	종 류	보유기준
기동장비	소방펌프차(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) 등	1대 이상
진압장비	수동식 소화기(3.3Kg이상)	2대 이상
	소방호스(40mm / 65mm)	(10/5)본 이상
	관창, 결합금속구 등	3개 이상
구조장비	사다리	1개 이상
보호장비	공기호흡기, 방화복, 안전모, 안전화, 장갑 등	대원별 1착 이상

※ 비고

1.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,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“○○전담의용소방대” 라고 표시한다.
2.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「구조장비 기준」 또는 「구급장비 기준」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

의용소방대의 명칭·구성 및 역할(제3조 관련)

구분	명칭	구성	역할
남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남성의용소방대	남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여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여성의용소방대	여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혼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	남성 여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(관할구역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)
지역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 ○○지역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전문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전문의용소방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산악,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
전담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전담의용소방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

~~※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.~~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)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	제6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	1.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입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 이수시간을 50%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
가. 전담의용소방대원: 다음 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 시간	
1)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 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 간 이상	
2)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본교육(해당되는 경 우에 한정한다) 18시간 이상	
나.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 원: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 상	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 방대원: 제18조제1항제2호	

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
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정원 등)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도: 60명 이내

2. 시·읍: 60명 이내

3. 면: 50명 이내

4.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: 50명 이내

5. 전문 의용소방대: 50명 이내

② ~ ④ (생략)

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대장과 부대장----- 대장은 한 -----.

②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임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정원 등) ① -----
----- 60명 이내로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임무) -----

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
3. (생략)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

가. (생략)

나.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

다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--- 공연, 축제 -----

2.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수습, 복구와 주민생활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의용소방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자체교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.

1. 신임교육 : 신규 -----
----- 날로부터 2년 이내에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화재의 성상 및 진압전술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

<신 설>

라. (생 략)

2.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

가. 수난(水難) 구조

나. 산악 구조

다. (생 략)

라.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처치

마. 생활안전구조

바. (현행 라목과 같음)

2. 기본교육 : 신임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(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)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12시간

가.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

나. 교통사고, 수난사고, 산악사고 등 인명구조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 재난 예방·대응 시 현장안전 및 대응역량 증진을 -----

3. 전담교육 :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위호의 기본교육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 12시간

가.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

나.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

다.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

② 제1항에 따른 <u>기본교육</u> 및 <u>전문교육</u>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소방본부장</u>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<u>훈련</u>을 실시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략) 제23조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<u>감사 2명</u>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(회장,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),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<u>하고</u> <u>한 번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2. 3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<u>다 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② ----- <u>신임교육,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</u>----- -----. ③ ----- <u>소방청장, 소방본부장</u> ----- ----- <u>훈련, 기술경연대회와 국내·외 연수 등</u>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 <u>2명(남녀 각 1명), 감사 2명(남녀 각 1명)</u> ----- ----- -----. ③ -----. 1. ----- <u>하며, 한 차례</u>-----. 2.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신 설>

제24조(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)

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, 연구개발분과위원회,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,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분과위원회: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연구개발분과위원회: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

3. 자원봉사분과위원회 : 대형재난과 관련한 시·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
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⑧ 전국연합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)

① -----
----- 분과위원회 -----

-----.

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77